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생용)

I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1)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¹⁾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접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파헤를 수변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키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1.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 사입니다.
-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 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 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 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꺼에요.
-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뚫리죠!
-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 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 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 워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 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꺼에요.

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라.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Ⅲ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 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 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전학

○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자.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 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